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 정정안내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내 용
소형 저가 주택 관련	<p>■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아파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단독주택) 및 제3조제1항제2호(연립주택)·제3호(다세대주택)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 별표 1 제1호가목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정정	<p>삭제 (입법예고 중으로 미적용)</p>